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발 의 자: 정은상 의원 외 8명
3.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조사 의뢰, 출장 동행 직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단서)

나.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외국정부의 공식 초청,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
(안 제11조제2항).

라. 징계처분을 받거나 환수조치가 결정된 의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안 제11조제4항)

마.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안 제12조제6항)

바. 공무국외출장 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의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 및 인사·평가상 불이익 금지, 비용부담 강요·사적 심부름·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6. 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0.(5일간)

7.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사운영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1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전화: 061-550-5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되도록 해야”를 “구성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10조 중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를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장”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완도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완도군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완도군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 <u>심사위원회</u> ’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① ----- ----- ----- ----- “ <u>심사위원회</u> ” ----- ----. <u>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u>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u> 한다.	② ----- ----- ----- ----- ----- <u>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u> ---- <u>구성하여야</u> ----.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u>30일전까지</u>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 ----- <u>30일 전</u> ----- -----

다.

②·③ (생략)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
에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
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생략)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
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
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신설>

4. (생략)

5. 제2항에 따라 환수조치가 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및 여비) -----

---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각 호-----

----- .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 공무국외출장--

<삭제>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
정된 경우

3. (현행 제4호와 같음)

<삭제>

정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완도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 4. (생략)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완도군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생략)

<신설>

<신설>

③ -----

-----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완도군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완도군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